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양부남 · 민형배
이수진 · 양문석 · 김현정
허성무 · 최혁진 · 김준혁
강경숙 · 이광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(이하 “입주자등”이라 함)가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,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.

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,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의2, 제102조제4항 등).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(이하 “금연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(이하 “흡연감지장치”라 한다)를 각 세대의 금연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흡연감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흡연감지장치 작동으로 흡연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

를 하여야 한다.

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조사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5조제1항 중 “필요한 비용”을 “필요한 비용, 흡연감지장치 설치·운영 비용”으로 한다.

제10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④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간접흡연의 방지 등) ① <u>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신 설> <신 설>	제20조의2(간접흡연의 방지 등)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 ② <u>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(이하 “금연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.</u> ③ <u>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(이하 “흡연감지장치”라 한다)를 각 세대의 금연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흡연감지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0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

④ 흡연감지장치 작동으로 흡연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조사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~ ⑨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 -----

-----필요한 비용, 흡연감지장치 설치·운영 비용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한다.	④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<u>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</u>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⑤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